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4차 정기
일시	18. 08. 07 13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1/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보고 안건

1. 2018년도 가을축제 'C:autumn'

: 9월 17일(월)~20일(목). 단과대학 축제는 사회과학대학(월)-경영경제대학(화)-인문대학(수) 순으로 진행. 동아리연합회 축제 수요일 진행.

: 17일(월)~18일(화) - 플라마켓, 19일(수) - 총장배 결승전, 20일(목) - 총학생회 주최 무대

2.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식

: 10월 10일 16시부터 진행. 입장은 14시부터 예정. 동문을 포함한 중앙대 구성원 모두 참여대상, 총 3500명 입장 가능 규모. 약 두 시간 반가량 진행. 핸드볼경기장 외부 공연 관련 내용은 논의 중.

□ 논의 안건

1. 반성폭력 회칙 개정 초안

-자연대학

: 2장 5조 해설, 성적 지향과 더불어 성 '정체성' 단어 추가 요망.

: 5조 2항 1-3, 오프라인 게시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간호대학: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답변내용, 전부 오프라인 게시하는 것의 현실 가능성 검토해야 함.//자연과학대학: 만약 오프라인으로 붙이려 한다면 붙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 현 회칙 내용, 온라인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는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음.//간호대학: 각 선거운동본부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 내용을 제공하여 해당 선관위가 답변 내용 공지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선거세칙이 개정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양식적인 검토 필요.

-약학대학

: 9조 3항 2번 인권침해 해설의 추가 여부, 각 구문을 바탕으로 시대 감성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간호대학: 더 이상의 해설을 적지 않는 것이 유연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

→ 다수 동의, 9조 3항 2번 인권침해 해설 추가하지 않음 결정.

: 선관위 질의서 송부 관련 내용. 단과대학은 각 단과대학의 선거운동본부가 있는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 의무조항을 통해 학생회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상하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음. 또한 답변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향후 학생회가 비대위체제로 전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해결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것. 회칙이 향후 끼칠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함. 더불어 대표자가 회칙을 기반으로 여러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적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일 것. 추가 논의 필요. (자연과학대학: 비대위와 관련하여 숙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 그러

나 학생사회 내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 후보자가 답변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회칙 내에 명시되어 있음. 학생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자가 성, 인권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우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선거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중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성을 위해 꼭 필요할 것.//동아리연합회: 중선관위 페이지를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약학대학: 중선관위 페이지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면 각 단과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우들 역시 본인 소속 이외 단과대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 유권자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음.//인문대학: 학우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선관위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음. 또한 해당 내용을 성평위가 아닌 중선관위가 보내는 것이 역으로 중선관위와 단선관위의 위계를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것. 기존처럼 특기구가 총학 선거, 단과대 선거에 동일 내용을 요청하고 송부 받는 것이 더욱 동등하다고 생각.//동아리연합회: 추가적으로 인권센터는 학생회 선거와 관련 없는 기관이므로 결부되어 논의되는 것은 맞지 않음.//예술대학: 의무는 명기하되 각 선관위의 형식으로 서면 공개된다면 위계관련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 것.//동아리연합회: 이번 회칙 개정 자체가 전학대회에서 전체 학생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음. 위계를 비롯한 기타 내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간호대학: 중선관위 검토를 거쳐 질문지가 발송된다면 질문 수위에 따른 부담은 크게 없을 것.//동아리연합회·인문대학·총학생회: 시기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답변에 대한 부담 적을 것으로 예상.//약학대학: 각 단위 특성을 반영한 질문 역시 필요. 단위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평위의 일괄적인 질문 발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위도 있을 수 있음. 각 단위 특성에 맞도록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선거는 중선관위가, 단과대학 선거는 단선관위가 검토하여 질문 확정하는 것은 어떠한지?//간호대학: 질문 발송 시 중선관위에서 질문 내용을 검토하므로, 공통적으로 발송되고 응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중선관위 검토에서 변경될 것.//동아리연합회: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으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성.)

-예술대학

: 5조 2항의 2, 특정한 예시 범위 변경 요망.(총학생회: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 변경할 것.)

-사범대학

: 7조 2항 가해피의자→가해지목인 변경 요망.

-의과대학

: 7조 2항 가해피의자 워딩 비적합. 가해지목인으로 통일하여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

-동아리연합회

- : 현 7조에 서술된 사건 당사자 부분을 앞선 회칙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 : 8조 2항 3, 신뢰인의 발언권 없음 전술 요망. 가해당사자 역시 신뢰인 동반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함.
- : 8조 3항 3, 법조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 학생단체와 법조인 사이 지식의 격차로 인해 합리적인 논의와 결정이 어려울 수 있음. 또는 법조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 회칙에 기재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아야 함. (총학생회: 자문 구할 것.)

-간호대학

- : 성평위 질의서 응답 내용 게시 주체 확정 요망.
- : 7조 4항 이후 신뢰인의 발언권 관련. 대리인의 자격 등 서술해야 함.

****공지방에 송부한 각 안 별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관련 내용 단위체별 최종 입장 피력 요망. (8월 20일 25차 정기회의에서 최종 논의 예정)**

□ 기타 안건

1. 회칙/세칙 개정 관련

: 빠른 시일 내 전 단위 송부 요망.

2. 대표자 성평등교육

: 8월 27일 OR 28일. 8월 둘째 주 내 확정.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2018-2학기 전학대회, 9월 11일(화) 진행 확정. 각 단위별 학과 학년대표자 선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공지 요망.